

#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5호
----------	------

제출연월일 : 2005. 9.28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일선에서 읍·면·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를 양양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실시로 중학생인 자녀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성적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을 일부완화 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안 제1조 및 제4조)

○ 중고등학생 ⇒ 고등학생

나. 장학생 자격을 완화(안 제2조)

○ 학과성적 평균 : 100분의 60이상 ⇒ 100분의 50이상

다. 장학금의 사용용도 변경(안 제6조)

○ 공납금 또는 공납금외 부수적 학자금 ⇒ 수업료, 육성회비, 학교 운영지원비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5. 8. 1 ~ 8. 2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아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아·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아·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중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의 학생에게” 로 한다.

제2조제1호중 “100분의 60” 을 “100분의 50”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을 “고등학교간의 균형”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생의 향학열 고취를 위해 수업료와 육성회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보호자인 아·통장이 아·통장 자격을 상실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아통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p>	<p>제1조(-----) ----- -----재능이 우수한 -----<u>고등학교의 학생에게</u>----- ----- ----- -----</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생략).</p> <p>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 평균이 <u>100분의 60이상인</u> 자에 해당하는 자</p> <p>2. (생략)</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1. ----- -----<u>100분의 50</u>----- -----</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선발)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u>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u> 고려하여야 한다.</p>	<p>제4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등학교간의 균형</u>----- ----- -----.</p>
<p>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생의 <u>향학열 고취를 위해</u> 공납금 또는 공납금 외 부수적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되, 지급액은 <u>공납금 전액으로</u>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 -----<u>수업료와 육성회비 및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으로</u>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생략)</p> <p>1.~5(생략)</p> <p>&lt;신설&gt;</p> <p>② (생략)</p>	<p>제8조(-----) ① (현행과 같음)</p> <p>1.~5.(현행과 같음)</p> <p>6. <u>보호자인 이·통장이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u></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발췌

## 教育基本法

第8條 (義務教育) ①義務教育은 6年の 初等教育 및 3年の 中等教育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모든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初·中等教育法

第12條 (義務教育) ①國家는 教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教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設의 확보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教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데 필요한 初等學校 및 中學校와 初等學校 및 中學校의 課程을 教育하는 特殊學校를 設立·經營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初等學校·中學校 및 特殊學校에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教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 合同으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를 設立·經營하거나, 인접한 地方自治團體나 國立 또는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에 委託하여 義務教育對象者의 일부에 대한 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④國·公立學校의 設立·經營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教育對象者를 委託받은 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義務教育을 받는 者에 대하여 授業料를 받을 수 없다.

第13條 (就學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滿6歲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學年初부터 滿12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서 해당 年數(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年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②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初等學校의 學生收容能力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滿5歲 아동의 就學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滿5歲에 就學한 子女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者는 그 子女 또는 아동이 滿11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

에는 滿11歲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③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初等學校를 卒業한 學年の 다음 學年初부터 滿15歲(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滿5歲에 就學한 者의 경우에는 滿14歲를 말하고,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中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의 履行 및 督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就學義務의 免除등)** ①疾病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就學이 불가능한 義務教育對象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를 免除하거나 猶豫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學年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學年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學年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 13조의 規定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신설 2002.8.26>